

[별표 6]<개정 2000.7.9, 2001.1.22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7조제1항관련)

위 반 행 위	해 당 법조문	석유정제업자		석 유 수출입 업 자	석 유 판 매 업 자			
		등록 대상	신고 대상		일반대 리 점 / 용제대 리점	주유소 /용제 판매소 /부생 연료유 판매소	부 산 물 인 석 유 제 품 판 매업자	신고 대상
1.법 제4조제1항 후단·제2항 후 단의 규정에 의 한 변경등록 또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때	법 제 3 8 조 제 1 항 제1호	3천 만원	2천 만원	—	—	—	—	—
2.법 제8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 의 신고를 한 때	법 제 3 8 조 제 1 항 제3호	—	—	3천 만원	—	—	—	—
3.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 의 보고를 한 때	법 제 3 8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2 항 제 9 호	3천 만원	2천 만원	2천 만원	1천 만원	2백 만원 (주 요 석유소 비자는 이 에 준함)	1천 만원	1백 만원
4.법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 항의 규정에 의 한 변경등록 또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변경	법 제 3 8 조 제 2 항 제4호	—	—	1천 만원	5백 만원	3백 만원	5백 만원	2백 만원

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때								
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비 고 :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규모·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